

평촌교회 인사규정(안)

2026. 1.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촌교회의 정관 제17조에서 규정한 인사규정(이하 “본 규정” 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상 및 직원)

- ①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목사는 본 규정의 청빙 해임 대상이 되며, 전도사 등 교역자도 본 규정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에 따르는 직원은 총회헌법시행규정의 직원 및 유급직원으로 한다. 직급은 실장, 팀장, 평직원으로 하고 별정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① 교역자 청빙 등 관련사항은 총회헌법을 준용한다.
- ②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급, 전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해임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 ③ 관련 용어는 일반 인사관례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교회 위원회 조직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인사위원, 서기로 구성하되 총원은 5~9명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 및 서기는 당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회원과 필요에 따라 당회의 인준으로 비당회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원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서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업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역자의 청빙과 해임의 심의
 2. 당회 요청에 따른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택의 심의
 3. 당회 요청에 따른 권징의 조사 및 보고
 4. 기타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유급직원의 징계 심의
-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당회에 상정하여 결의한다.

제10조(회의소집)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요청한 경우
2. 당회에서 위원회에 심의 사안을 요청한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기타 권징의 의결 요구가 있을 때

제3장 교역자

제11조(담임목사 청빙 및 사임)

- ① 담임목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 한다) 제2편 정치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2. 청빙공고일 현재 만45세 이상인 자
 3. 목회경력(설교 및 교구사역) 7년 이상 또는 단독목회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4.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자
- ② 담임목사 청빙의 경우, 별도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본 인사위원회에서 청빙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세칙을 만들어 당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결의된 사항으로 청빙한다.
- ③ 청빙 후보자와 특수한 관계가 확인된 위원은 청빙직무에서 당연 배제한다.
- ④ 청빙된 담임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위임받도록 한다.
- ⑤ 담임목사는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앙과 윤리적으로 교인의 지탄을 받으며, 성경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담임목사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회의 권고로 자진사임할 수 있으며, 권고에 불응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노회에 시무사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⑥ 위임목사인 담임목사는 본 규정에 준하나, 노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부목사 청빙 및 사임)

- ① 부목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총회헌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45세 이하인 자
 - 2. 전임 교역자로서 2년 이상 경력을 소유한 자
 - 3.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자
- ② 청빙방법은 신문 등에 공고하고 서류를 접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청빙한다.
 - 1.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청빙인 수의 3배수로 선정한다.
 - 2. 담임목사의 면접심사후 결과 보고를 득하여, 서류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회에 상정한다.
 - 3. 당회의 결의로 선정하고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
- ③ 부목사의 임기 및 연임은 총회헌법에 따르되, 최장 임직일로부터 7년이 되는해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6년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회 결의 절차를 따른다.
- ④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앙과 윤리적으로 교인의 지탄을 받으며, 성경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목사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회의 권고로 사임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노회에 시무 사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직원선택 조항에 따른 협동목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본 교단 목사에 한정한다. 이 경우에도 부목사는 될 수 없다.

제13조(전임 준전임 교역자 청빙 및 사임)

- ① 전임·준전임 교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 2. 전임·준전임 교역자는 교육목사 교육전도사를 지칭하며, 교육목사가 아닌 전임목사는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기타 청빙 방법 등은 제12조의 각항을 준용한다.

제4장 항존직 및 직원

제14조(항존직)

- ①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 및 선거 등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② 항존직의 은퇴는 정관 관련규정에 따른다.
- ③ 본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가 본 교회에 등록(이명증서 제출)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 요청과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될 수 있으며,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 ④ 안수집사 및 권사의 시무사임과 사직은 총회헌법 정치편 제56조에 의하며, 휴직처리 없이 6개월 이상을 시무하지 아니할 경우 사임하게 한다
- ⑤ 항존직은 무급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항존직 임직 이전에 유급봉사자로 사역을 담당하던 자는 항존직 임직과 동시에 무급봉사자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존직중 유급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달리 정하여 유급사역 할 수 있다.

- ⑥ 항존직 및 항존직 특수관계자는 유급직원이 될 수 없다. 단, 유급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달리 정하여 유급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⑦ 항존직중 제15조에 정하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자는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15조(직원)

- ① 교회의 사무 및 기능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우선채용대상으로 한다. 본조에 정하는 “직원”은 제14조에 정한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유급사역자와는 구별되는 사람으로 교회로부터 출·퇴근과 근무방식 등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를 지칭한다,
 - 1. 본 교단에서 신앙생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채용직종 관련 해당 경력과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3. 본 교회 교역자 항존직과 특수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자
 - 4. 관련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② 채용 기준은 해당 직종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보직 및 이동과 직무대리 겸직 등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취업규칙 등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④ 급여 등은 별도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 ⑤ 목사 이외의 유급 직원의 정년은 관계법상 정년을 정하지 아니하나, 교회 규정으로 60세로 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회 결의로 달리 정하여 유급으로 촉탁할 수 있다.
- ⑥ 직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 형사사건에 계류된 자
 - 2. 직무수행에 현저히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만한 자
 - 3.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4.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손해를 끼치는 자
 - 5. 직원의 채용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직원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교회·단체·기관에 소속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6조(취업규칙의 준용)

- ① 모든 교역자 및 직원은 법에 따른 취업규칙 등을 준용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② 기타 유급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성립하여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성립 및 처리된 것으로 본다.